재단법인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제2차 본부 및 소속시설 직원 채용 공고

「재단법인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의 본부 및 소속시설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3월 6일

(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장

I

채용개요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채용직위	채용인원	고용형태	직무내용
합계		15명		
본부	주임(6급)	1명	정규직	• 경영기획, 민간지원, 시설지원 관련 업무
전북서부	상담원	1명	정규직	노인학대예방사업 및 사례개입
노인보호전문기관	교육사업전담인력	1명	계약직	노인학대예방 교육시업 전담
전라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	교육사업전담인력	1명	계약직	노인학대예방 교육사업 전담
전라북도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센터	조리원	1명	계약직	· 사회복지시설의 조리업무 (파견된 시설 조리업무)
장수지역자활센터	팀장(4급)	1명	정규직	◦ 자활사업
	사회복지사	1명	정규직	∘ 가족사업 운영 업무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	1명	정규직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다문화가족자녀 사회포용안전망 다배움 전담인력	1명	정규직	∘ 다문화가족 자녀 취학준비 학습지원(다배움)
장수군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전담인력	1명	정규직	∘ 공동육아나눔터 전담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추가인력	1명	계약직	· 공동육아니눔터 운영 관련 업무
	언어발달 지도사	1명	정규직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언어평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
	방문교육 지도사	2명	정규직	· 방문교육/업부모교육, 지급생활사비스 제공
장수 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	1명	계약직	∘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등 업무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2. 근로조건

구분	채용직위	근무기간	보수기준	근무형태	근무 지역
본부	주임(6급)	임용일~정년 (수습평가 후 정규직 임용)	·기본연봉 : 24백만원~45백만원 ·부가급여 별도	주 5일 (주 40시간)	전주
전북서부	상담원	임용일~정년 (수습평가 후 정규직 임용)	'23년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 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주 5일 (주 40시간)	김제
노인보호전문기관	교육사업 전담인력	임용일~'23.12.31 (근로종료 후 근로계약 종료)	'23년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 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주 5일 (주 40시간)	김제
전 라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	교육사업 전담인력	임용일~'23.12.31 (근로종료 후 근로계약 종료)	'23년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 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주 5일 (주 40시간)	전주
전리북도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센터	조리원	임용일 [~] 23.12.31 (근무평가 후 계약연장 결정)	'23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안내 지침에 따름	주 5일 (주 40시간)	도내 14개 시·군
장수 지역자활센터	팀장 (4급)	임용일~정년 (수습평가 후 정규직 임용)	보건복자부 지활사업안내, [지역자활센터 직제 및 보수지침] 준용	주 5일 (주 40시간)	장수
	사회복지사	임용일~정년 (수습평가 후 정규직 임용)	여성가족부 2023년 기족시업인내」 [인간비 가이드라인] 준용	주 5일 (주 40시간)	장수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	임용일~정년 (수습평가 후 정규직 임용)	여성가족부 2023년 기족시업안내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주 5일 (주 40시간)	장수
	다문화가족자녀 사회포용인전망 다배움 전담인력	임용일~정년 (수습평가 후 정규직 임용)	여성가족부 「2023년 기족사업안내」 [인간비 가이드라인 준용	주 5일 (주 40시간)	장수
장수군 가족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전담인력	임용일~정년 (수습평가 후 정규직 임용)	여성가족부 「2023년 기족시업안내」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주 5일 (주 40시간)	장수 (장계면)
	공동육아 나눔터 추가인력	임용일~'23.12.31 (근로종료 후 근로계약 종료)	'23년 최저시급	주 5일 (주 20시간)	장수 (장 수읍)
	언어발달 지도사	임용일~정년 (수습평가 후 정규직 임용)	여성가족부 「2023년 기족시업안내」 [인간비 가이드라인 준용	주 5일 (주 40시간)	장수
	방문교육 지도사	임용일~정년 (수습평가 후 정규직 임용)	여성가족부 2023년 기족시업안내 [지도사시급 준용	주 5일 (주 16시간)	장수
장수 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	임용일~'23.11.30 (근무평가 후 계약연장 결정)	11,458원(시급)	주 5일 (일 3시간)	하단 참조

- ※ (공통) 본부를 제외한 기관은 전라북도 및 시·군 위탁사업, 계속사업 종료시 근로 관계 종료(정규직 포함)
- ※ (본부) 채용자격기준과 보수인정경력은 다를 수 있음
- ※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업무 특성상 주중 18:00시 이후 및 휴일의 경우 착신통화 전환조치를 통해 신고전화의 접수, 상담 및 응급사례 발생 시즉시 현장조사 가능해야 할 수 있음
- ※ (장수군가족센터) 공동육아전담인력·추가인력, 방문교육지도사는 9:00~19:00 내에서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 ※ (장수종합재가센터) 근무일시 및 보수는 대상자별 장기요양 이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근무장소는 장수·무주·진안 등으로 변경 될 수 있음

II

응시 자격요건

1. 공통요건

- ※ 공통요건, 응시자격기준, 우대사항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거주지 및 일부 채용분야(방문교육지도사, 언어발달지도사)는 별도 적용
- 응시연령: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
 - ※ 단, 조리원은 만20세 이상에서 만65세 이하, 요양보호사는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
- 거주지: 공고일 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로 되어 있는 자
- 결격사유: 채용분야별 다음 결격사유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구분	채용직위	결격사유
고	통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전북서부	상담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노인보호전문기관	교육사업전담인력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전라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	교육사업전담인력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전라북도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센터	조리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기타 대상시설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종사자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
장수지역자활센터	팀장(4급)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장수군기족센터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다문화가족자녀 사회포용안전망 디배움 전담인력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구분	채용직위	결격사유
장수군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전담인력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공동육아나눔터 추가인력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언어발달지도사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방문교육지도사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장수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제39조의17

2. 응시 자격기준

구분	채용직위	자격기준		
본부	주임 (6급)	o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9급(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유관 단체 등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4.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전 북서 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수료한 사람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수료한 사람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교육사업 전담인력	2.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3.「의료법」에 따른 의료인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전 라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		o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수료한 사람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구분	채용직위	자격기준	
전라북도 사회복지 대체인력자원센터	조리원	o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조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단체급식 양성교육 이수자 3. 조리업무 경력자	
장수 지역자활센터	팀장 (4급)	o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 제 근무한 경력자 중 사회복지사 또는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2. 3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사회복지사	o 건강가정사 또는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중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2.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3.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	o 관련학과(사회복지학, 상담학, 가족복지학 등 사례관리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다면화주다 사회도왕전망 다배조건만력		
장수군	공동육아 나눔터 전담인력	1.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가족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추가인력	o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자) 2. 전산,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3. 기타 위 각 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언어발달 지도사	○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촉진학과 전문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는 양성교육(온라인, 집합교육) 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 가능 ※ 양성교육 중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 다음 회차에 있는 양성교육 중 집합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로 3년 이상 활동하고, 퇴직한 지 3년 미만인 지도사의 경우 집합양성교육 없이 재채용 가능(단, 온라인 양성교육 과정 5시간 이수 후 채용)	

구분	채용직위	자격기준
장수군 가족센터	방문교육 지도사	○ 건강가정사·보육교사·교원(유치원교사자격 포함) 자격을 보유한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임용일 전 양성교육 이수한 지도사에 대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로 임명 ※ 단, 양성교육 중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 다음 회차에 있는 양성교육 중 집합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방문교육지도사로 3년 이상 활동하고, 퇴직한 지 3년 미만인 지도사의 경우 집합양성교육 없이 응시 가능 (단, 임용일 전 온라인 양성교육과정 8시간 이수 필수)
장수종합 재가센터	요양보호사	o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자

- ※ 본부(주임) 공공기관, 유관단체, 해당분야
 - o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공공 기관(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한 법인, 기관 및 단체 포함), 「지방 공기업법」에서 정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 o (유관단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인정대상경력 기관*
 - * 단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중 유사경력의 '가목·고목·소목·초목'은 제외
 - o (해당분야) 사회복지, 문화*, 체육 관련 학위
 - * 문화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제1항제1호의 문화예술 관련 학위
- ※ 장수지역자활센터(팀장) 사회복지사업.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 o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규정된 사업
 - o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직업상담사, 경영지도사,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전산세무. 전산회계 등 자활 지원관련 자격증 소지자
- ※ 장수군가족센터(사회복지사, 공동육아전담인력·추가인력) 관련 학과, 관련 사업
 - o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o (관련사업)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상근근무)

3. 우대사항

구분	요건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 지원대상자로 공고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만점의 5~10%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고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만점의 5%

- * 우대사항은 필기 및 면접시험에 적용하되.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적용
- * 우대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산점 적용

Ш

채용일정 및 세부사항

1. 채용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3. 6.(월)~3. 27.(월)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00"	0. 0.(E) 0. 27.(E)	전북도청, 클린아이 등
응시원서 접수	3. 20.(월)~3. 27.(월)	채용사이트에서 접수
서류합격자 발표	3. 31.(금)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필기시험	4. 8.(토)	대상: 본부(주임), 장소: 전주
필기합격자 발표	4. 14.(금)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면접시험	4. 18.(호ト)	
최종합격자 발표	4. 21.(금)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임용예정자 등록	4. 24(월)~4. 28.(금)	사회서비스원
임용	5. 1(월)	임용 시 근무일 변경 불가

2. 세부사항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3. 3. 20.(월)~3. 27.(월), 18:00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s://recruit.incruit.com/jeonbuk-pass/)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직무수행계획서는 '본부 주임', '장수지역자활센터의 팀장'만 작성
- 유의사항
 -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
 - · 자격기준 중 필수사항(경력, 자격증, 교육이수 등)은 지원서에 반드시 기재
 - 제출서류는 자격기준 적격 여부 확인 및 서류심사를 위해 사용

○ 서류심사

- 심사대상: 지원서 접수자 전원
- 합격인원: 합격기준 적합자 전원
- 합격기준
 - · 자격기준 부합 여부 및 제출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 제출서류 미비, 지원서 등 작성 내용이 현저히 불성실한 응시자는 서류 부적격 처리

- 유의사항
 - · 서류심사는 증빙서류 없이 지원서에 기재사항으로 심사하고, 추후 면접시험 시 제출된 서류 등의 허위기재 및 기재 착오 등이 있을 시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필기시험

- 시험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본부)
-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단, 필기시험 합격자가 3배수 미만의 경우는 해당 인원)

- ※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단, 동점자의 계산은 필기시험 점수의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절사 하여 둘째자리까지 함)
- 시험내용: NCS직업기초능력검사(50문항, 4지선다형)
 - ※ 평가영역: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직업윤리
- 합격기준 : 필기시험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

○ 면접시험

- 시험대상: 서류심사 합격자(본부 외), 필기시험 합격자(본부)
- 합격인원: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 ※ 예비합격자명단은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까지 부여하며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임용할 수 있음
- 진행방법 : 면접위원별 블라인드 질의응답식 심층면접
- 합격기준
 - · 공적 책무성·사회서비스원의 목적성 부합 여부, 이해력 및 지식수준,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인성과 직업관, 창의성 및 전문성 심사
 - · 면접위원별 100점 만점으로 평균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순으로 결정 (면접위원 합계 평균점수에 소수점이 발생할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시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함)
 - ※ 동점자 처리: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면접점수 우선 항목별 고득점 순 (① 공적 책무성·사회서비스원의 목적성 부합 여부, ② 이해력 및 지식수준,
 - ③ 창의성 및 전문성, ④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 인성과 직업관)

- 제출서류
 - 면접시험 당일 유효기간 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면접 시 준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비고	발급기간	
공통	주민등록 초본	주소변동 기재, 병역사항 포함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수 (초본으로 확인이 불가 시 병적증명서 제출)	공고일 이후	
해당자	졸업증명서	전문대학 이상 졸업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공동육아나눔터 추가인력 응시자가 고등학교만 졸업한 경우)		
	경력 및 재직증명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기재	기간 무관	
		* 근무지 폐업 등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단, 폐업 사실증명 제출(세무서 발급 가능) * 미제출 시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자격증	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	교육이수 증빙(교육이수가 응시 자격기준인 경우) * 노인학대예방교육, 양성교육, 건강가정사	공고일 이전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공고일 이후	

※ 재직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

3. 유의사항

- 접수 시 공고내용 미확인,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의 오기 또는 미기재, 지원서 형식 미사용, 연락불능 등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기재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 불가
- 응시자는 접수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 가족관계 등의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형 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 분야의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없는 경우 포함) 등 에는 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되지 않은 응시자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에 따라 채용 확정 이후 14일 이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출 필요
- 채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안내문을 참조하여 해당 양식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용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확진 및 발열 여부에 따라 필기 또는 면접이 제한될 수 있으며, 마스크 미착용 시 필기 및 면접장 입장이 불가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영기획팀(063-906-4034)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요건(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채용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7.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죄를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저질러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따른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13.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준용) 결과부적격판정을 받은 사람
- 14.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